

국토교통부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연 월 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교육훈련의 실시근거 및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마련 등을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7975호, 2021. 3. 23. 공포, 2022. 3. 24. 시행)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및 공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안 제2조의21 신설)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을 위한 첨부 서류와 기술자증명서 발급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

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 및 지정취소 기준 등(안 제2조의23 및 안 제2조의24, 별표 2의2 신설)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교육훈련 수료증 발급, 교육비 명세 제출 등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지정취소·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을 정함

다.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및 공고(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대행계약 체결·변경·이행 시 30일 이내에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교

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고, 수탁기관의 장은 매년 대행실적 및 행정처분 내용을 시스템에 공고하고 대행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라.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활용(안 제13조의4 신설)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활용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스템을 활용하는 업무를 추가로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3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수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수탁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조의14제1항제3호 중 “기술능력”을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등록된 기술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수탁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조의15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수탁기관의 장”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를 “한다)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16 중 “법 제27조제1항제1호”를 “법 제27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조의19를 삭제하고, 제2조의17 및 제2조의18을 각각 제2조의18 및 제2조의19로 하며, 제2조의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17(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

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조의19(중전의 제2조의18)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수탁기관의 장”으로, 같은 항 중 “공고”를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하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로 한다.

제2조의20의 제목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으로 한다.

제2조의20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조의21부터 제2조의24까지 및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1(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에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통영향평가기술자는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이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라 한다)를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발급(신규·갱신·재발급) 신청서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11호의4 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교통영향평가기술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변경신청서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별지 제11호의6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발급 대장에 제3항에 따른 발급내용 및 발급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 유지·관리할 수 있다.

1.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성명, 근무처, 자격 및 학력
2. 교통영향평가등의 업무와 관련한 경력
3.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실적

⑦ 수탁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 경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수탁기관은 제7항 후단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 후단에 따라 승인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조의22(교통영향평가기술자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32조의3제6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하여 제32조의3제4항에 따라 처분내용을 공개하려는 경우 성명, 위반사항 및 처분내용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2조의23(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13조의11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7서식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의8서식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계획을 교통영향평가정보

지원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이수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게 별지 제11호의9서식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조의24(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① 법 제32조의5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내용을 30일 이상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등)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이하 “대행실적”이라 한다)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대행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을 작성하여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행계약의 체결(변경) 실적 보고: 계약서(대행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반영된 계약서를 말한다)
2. 대행계약의 이행실적 보고: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참여기술자 명단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완료 통보서

제13조의3(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등의 공고) ①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

51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1. 교통영향평가대행자별 대행업무 건수, 평가대행 비용 등을 포함한 대행실적

2. 교통영향평가대행자별 처분 내용 및 처분 사유를 포함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② 수탁기관의 장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대행실적,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 및 기술인력의 교통영향평가 관련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1.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2.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해당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의4(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활용) 법 제52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28조에 따른 업무의 폐업

3. 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4. 법 제32조의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관리 및 교통영향평가
기술자증명서의 발급
5. 법 제51조2에 따른 대행실적의 관리
6. 그 밖에 기초자료 연구·조사의 수집과 보급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7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8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9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제2조의12 관련)

1. 일반 요건

- 가.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교통영향평가기술자를 말하며, 기술자격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한다.
- 나.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 다.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사람은 다른 기관이나 업체 등에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다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 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다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무소의 경우 보유한 기술인력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2. 세부 요건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교통에 관한 연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통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교통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특급 평가자를 1명 이상 보유할 것
- 나. 시행령 제13조의9제1항에 따른 [별표 1의2]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중 특급 평가자, 고급 평가자, 중급 평가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1명 이상씩 포함하여 3명 이상 보유할 것(단, 하위 등급 교통영향평가기술자는 상위 등급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음)

교통영향평가서 등의 거짓·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제2조의17 관련)

1. 교통영향평가서의 거짓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다음 각 목과 같이 현황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교통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교통현황조사를 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교통현황조사를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교통영향평가서에 제시한 경우
- 나. 교통현황조사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교통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
- 다. 교통영향평가서에 인용하는 문헌 등에 제시된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라.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을 교통영향평가대자가 대행하는 경우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조사·확인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2. 교통영향평가서의 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다음 각 목과 같이 교통영향평가서 작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여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협의기관이 적절하게 검토하기 어렵게 하거나 교통영향평가서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경우를 말한다.

- 가.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4조(보고서의 작성기준)의 내용항목을 누락한 경우
- 나.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31조(교통개선대책의 이행여부 확인)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이행여부 확인보고서 작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다. 고시 또는 공고되어 외부에 알려진 사업지와 관련 있는 중요한 교통계획, 개발계획 등을 임의로 누락하거나 변경한 경우
- 라. 주차장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개선안을 도출한 경우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2조의20 관련)

1. 일반 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의 최근 2년간(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2년(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3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
- 라.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 기준

위반사항	관련조항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29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9조제1항제2호	등록취소			
다. 등록 후 2년 이내에 제23조제6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	법 제29조제1항제3호	경 고	등록취소		
(이하 “대행업무” 라 한					

다)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대 행업무의 실적이 없는 경 우					
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능력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9조제 1항제4호				
1)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 한 경우		경 고	경 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2)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마.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 하여 제2조의14제1항 각 호의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 고 변경한 경우	법 제29조제 1항제5호	경 고	경 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바. 법 제26조제3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서 3 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 외한다.	법 제29조제 1항제6호	등록취소			

사. 법 제27조제2항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1) 교통영향평가서·이행 의무사항 확인자료 및 그 수립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2)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3) 도급받은 대행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다만, 제 2조의17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4) 다른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교통영 향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5) 대행업무의 수행과 관 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향응을 사업자에 게 제공하거나 사업자로 부터 받은 경우 6)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교통영향평 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을 맡긴 경우 아. 법 제29조에 따른 업무	법 제29조제 1항제7호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	-----------------------------	--	---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	1항제8호				
정지기간 중 신규로 대행					
업무 를 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교통영향평가기술자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2조의22 제1항 관련)

1. 일반 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인정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4차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경우	법 제32	인정			
	조의3제1	취소			
나.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기준에	항제1호				
	법 제32	인정			
	조의3제1	취소			
	항제2호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					
다.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경우	법 제32조 의3제1항제3호	인정정지(「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또는 법 제65조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으로 한정한다)			
라. 법 제32조의4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의3제1항제3호	경고	인정 정지	인정 정지	인정 정지
마. 다른 사람에게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증명서를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법 제32조 의3제1항제5호	인정 취소	1개월	3개월	6개월
바. 다른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법 제32조 의3제1항제6호	인정 정지	인정 정지	인정 정지	인정 정지
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교통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법 제32조 의3제1항제7호 및 8호	3개월 인정 정지	6개월 인정 정지	9개월 인정 정지	12개월 인정 정지
아. 다른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	법 제32조 의3제1항제9호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자.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이 정지된 기간 중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작성한 경우	법 제32조 의3제1항제10호	인정정지(해당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으로 한정한다)			
		인정 정지	인정 취소		
		6개월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제2조의24 제1항 관련)

1. 일반 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인정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 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2조의5 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교통	법 제32조의5 제1항제2호	지정취소			

영향평가교육훈련 업무 를 수행한 경우					
3. 법 제3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 영향평가교육훈련 수료 증을 발급한 경우	법 제32조의5 제1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4. 법 제32조의4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 니하게 된 경우	법 제32조의5 제1항제4호	경 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등 록 번 호 제 - 호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

기관(업체) 명칭		
대 표 자 성 명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전화번호	
기 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13제3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직인

(뒤쪽)

<변경사항>

연 월 일	내 용	확 인

<행정처분사항>

연 월 일	내 용	확 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한글	생년월일		증명사진 (3.5cm×4.5cm)
		한자			
		영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국적		
주소					
근무처	회사명(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입사일
경력기간	경력기간	0년0월			
학력	재학기간		졸업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 . . ~ . . .				
	. . . ~ . . .				
기술자격	합격일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 . .				
	.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1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3.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1부 4. 별지 제12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 경력확인서[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및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교통영향평가 교육훈련 수료증 1부 *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	----------------------------

유의사항

-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교통영향평가 경력확인서

인적사항	①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주소			
소속회사	③회사명		대표자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④등록번호	
	⑤입사일		⑥퇴사일	전화번호
기술경력				
연 번	⑦참여기간		⑧참여사업명	
	⑩사업종류	⑪사업코드	⑫담당업무	⑬직위
	⑭대행개요(70자 이내 공란포함)			⑮대행금액 (백만원)
	 ~			
	 ~			

위와 같이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

직인

유의사항

1. 2장 이상의 경력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술경력만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장에 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간인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2. 대리인 작성 시 작성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	-----------------	------	-----

210mm×297mm[백상지(80g/㎡)]

작성방법

1. ①란의 (서명 또는 인)에는 교통영향평가 기술인력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②란의 주소가 이미 신고한 주소에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주소를 적고 그 뒤에 (변경요청)이라고 기재합니다.
3. ③란의 회사명은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를 정확히 적어야 하며 상호가 상호변경 또는 흡수합병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상호를 적고 그 뒤에 (상호변경) 또는 (흡수합병) 중 어느 하나를 적어야 합니다.
4. ④란의 등록번호는 교통영향평가협회 등록 시 발급받은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5. ⑤란의 입사일은 소속 회사의 입사일을 기재합니다.
6. ⑥란의 퇴사일은 소속 회사의 퇴사일을 말하며, 현재 근무 중인 경우 "근무 중"으로 기재합니다.
7. ⑦란의 참여기간은 해당 용역에 실제 참여한 기간을 적으며,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 등의 착공일과 준공일을 벗어나지 않도록 기재합니다. 다만, 착공일 이전 수행한 업무(조사 등) 또는 준공일 이후 수행한 업무(관리 등), 참여기간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 (예: 참여기간이 1. 1. ~ 5. 31., 9. 1. ~ 12. 31.인 경우)등은 기간 및 담당업무를 분리하여 작성이 가능합니다.
8. ⑧란의 참여사업명은 교통영향평가 기술인력이 실제 참여한 대행계약 또는 실적보고서에 표기된 사업명을 기재합니다.
9. ⑨란의 발주자는 해당 교통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을 발주한 기관명 · 업체명 또는 개인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10. ⑩란의 사업종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별표 1에 따른 해당 사업 · 시설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11. ⑪란의 사업코드는 ⑩란의 사업종류에 관한 코드를 기재합니다.
(예시) 별표 1의 1. 개발사업 중 가. 도시의 개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 공원의 경우 "1-가-3)-다)"로 기재
12. ⑫란의 담당업무는 평가책임기술자, 평가기술자, 평가보조기술자, 평가서 검토 · 협의, 용역감독자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13. ⑬란의 직위는 해당 대행업무에 참여할 당시의 직위를 기재하면 됩니다.
14. ⑭란의 대행개요는 교통영향평가 기술인력이 참여한 용역 규모 등을 적고 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면 됩니다.
※ 대행개요는 주요 내용만 최대 70자 이내(공란포함)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15. ⑮란의 대행금액은 교통영향평가 기술인력이 참여한 대행금액을 기재하고, 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
(예시) 대행금액: 1,000(백만원)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3서식]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발급

[] 신규
[] 갱신
[]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증명사진 (3.5cm×4.5cm)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소속회사	회사명(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분야	직무 및 전문분야		
발급사유			
발급 번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1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최초로 발급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	----------------------------

유의사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 신청·수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수령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앞쪽)

발급번호	NO.						증명사진 (3cm×4cm)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급	기술자등급						
	인정일			등 급			
국가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학력	졸업일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교육훈련	교육기간	교육기관명		과정명			
벌점 및 제재사항	벌점						
	제재일	종류		근거		제재기관	
근무처	근무기간	상호		근무기간	상호		
	~			~			
	~			~			
	~			~			
	~			~			
	~			~			
	~			~			
	~			~			
	~			~			

210mm×297mm [백상지 (80g/㎡)]

주요 경력						
참여기간 (인정일수)	사업명		대상사업 코드	평가분야	담당 업무	비고
	발주자	용역 금액(백만원)		평가종류	직위	
	용역개요(법적근거, 면적, 연장 등)					
~						
~						
~						
~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1제3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직인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변경사항					
[] 근무처	전 소속회사	회사명(대표자)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록번호
		입사일	퇴사일	전화번호	
	현재 소속회사	회사명(대표자)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록번호
		입사일			전화번호
[] 기술자격	변경 전			변경 후	
[] 학력	변경 전			변경 후	
[] 경력	변경 전			변경 후	
[] 교육·훈련	변경 전			변경 후	

위와 같이 경력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	----------------------------

유의사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6서식]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발급대장

[illegible]

※ 발급구분은 신규, 갱신 또는 재발급으로 표기합니다.

210mm × 297mm [백상지 (80g/ m²)]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7서식]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조의4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11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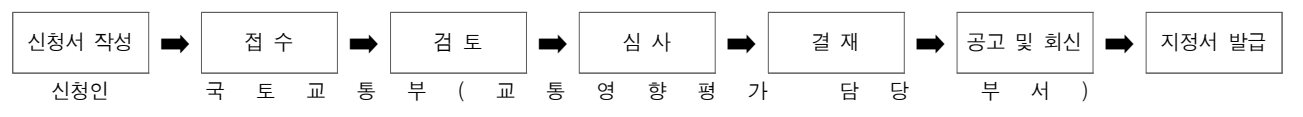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 2.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운영규정 3.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그 밖의 단체에 한정한다) 4.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학력·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에 필요한 강의실 등 시설 내역서 6.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지정번호: 제 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생년월일:)

3. 소 재 지:

4. 사업 내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조의4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11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3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제 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수료증

성명:

생년월일:

소속:

교육과정:

교육종류:

교육기간: . . . ~ . . . (시간)

위 사람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조의4 ①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3제5항에 따라 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교통영향평가교육기관의 장

직인

[] 체결
교통영향평가 대행계약 [] 변경 **실적보고서**
 [] 이행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	------

1. 보고인 현황

기관(업체)명		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2. 대행사업 현황

대행사업명			
사업 소재지			
사업규모		사업기간	
계획 및 사업의 종류		계획 및 사업의 코드	
대행사업의 개요			

3. 계약현황

발주자(기관)		전화번호	
계약자	주 계약자 :	지분율(%)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번호 :)		
	공동계약자 :	지분율(%)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번호 :)		
(변경)계약일자		(변경)계약기간	
(변경)계약금액	원	낙찰률	%
협약내용 통보일자		준공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 참여 기술자 현황

대행계약(변경계약) 체결 시				대행계약 이행 시			
소속회사 (참여기간)	성명 (기술자격)	생년월일	담당 업무	소속회사 (참여기간)	성명 (기술자격)	생년월일	담당 업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대행계약의 체결(변경) 실적 보고: 계약서(대행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내용이 반영된 계약서를 말합니다) 사본 1부 2.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보고: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참여 기술자 명단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완료 통보서 사본 각 1부
------	--

작성방법

1. 보고인 현황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현황을 작성하되, 공동계약인 경우 주 계약자가 작성합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이 변경된 경우(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참여 기술자)에는 변경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2. 대행사업 현황은 다음에 따라 작성합니다.
 - 대행사업명: 대행계약서에 기재된 사업명을 기재
 - 사업소재지: 대행사업의 사업예정지의 대표 소재지를 기재
 - 사업규모: 해당사업의 면적, 길이 등 규모를 단위와 함께 기재
 - 사업기간: 해당사업의 예정된 사업기간을 기재
 - 계획 및 사업의 종류·코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해당 계획·사업의 종류 및 코드를 기재[예시: 별표 1-가-2]
3. 계약 현황은 다음에 따라 작성합니다.
 - 낙찰률은 발주금액 대비 낙찰(계약)금액의 비율을 기재
4. 참여 기술자 현황은 대행계약 체결 보고서 참여 기술자를 기재하고, 참여 기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행계약 이행 실적 보고서 변경 전·후를 알 수 있도록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소속회사 및 참여기간: 참여 기술자가 소속된 회사명과 해당 기술자가 대상사업에 참여한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
 - 기술자격: 기술자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급과 보유 자격을 기재[예시: 고급·교통기사, 중급·석사학위]
 - 담당업무: 평가책임자, 교통개선대책 수립, 문제점 분석, 교통수요 예측, 교통현황조사, 평가서 검토·협의 중에서 해당 업무를 기재(구분이 어려울 경우 직접 기재)
5.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13(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13(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 ----- ----- ----- ----- ----- ----- ----- <u>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u>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을 확인하여야 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 <u>수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u> ----- ----- ----- -----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③ 수탁기관의 장-----

따른 등록신청이 제2조의12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통영향평
가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조의14(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신청) ① 법 제26조제
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2. (생략)

3.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
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
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영향평
가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15(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등의 공고) 국토교통부장
관은 제2조의13제3항에 따라 교

-----.

제2조의14(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신청)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등록
된 기술인력-----

② -----

----- 수
탁기관의 장-----
-----.

제2조의15(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등의 공고) 수탁기관의 장

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법 제29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의16(교통영향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사업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10년을 말한다.

<신 설>

제2조의17 (생 략)

제2조의18(폐업신고 등) ①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
----- 한다) 및 국토교통부장관---.

제2조의16(교통영향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 법 제27조제1항제4호-----

--.

제2조의17(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조의18 (현행 제2조의17과 같음)

제2조의19(폐업신고 등) ① ----

행자 폐업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아 해당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조의19(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조의20(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신 설>

③ (생략)

<신 설>

----- 수탁기관의 장-----.

② 수탁기관의 장-----

-----.

③ 수탁기관의 장-----

-----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하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

<삭 제>

제2조의20(교통영향평가대행자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조의21(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① 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통영향평가기술자는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이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라 한다)를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발급(신규·갱신·재발급) 신청서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교통영향평가기술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변경신청서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별지 제11호의6 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발급대장에 제3항에 따른 발급내용 및 발급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 유지·관리할 수 있다.

1.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성명, 근무처, 자격 및 학력
2. 교통영향평가등의 업무와 관련한 경력
3.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실적

⑦ 수탁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 경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수탁기관은 제7항 후단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 설>

<신 설>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 후단에 따라 승인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조의22(교통영향평가기술자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32조의3제6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하여 제32조의3제4항에 따라 처분내용을 공개하려는 경우 성명, 위반사항 및 처분내용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2조의23(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13

조의11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
평가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7
서식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기관 지정 신청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
기사항 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
평가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때
에는 별지 제11호의8서식의 교
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
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
다.

④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은 교육·훈련계획을 교통영향
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하
여야 한다.

⑤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이
수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게

<신 설>

<신 설>

별지 제11호의9서식의 교통영
향평가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
하여야 한다.

제2조의24(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①
법 제32조의5제4항에 따른 교통
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
표 2의3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
평가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내용을 30일 이상 교통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행실
적의 보고 등) 교통영향평가대
행자는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이하 “대행실적”이라
한다)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대행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8호
서식을 작성하여 교통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1. 대행계약의 체결(변경) 실적
보고: 계약서(대행계약이 변경
된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반영
된 계약서를 말한다)

2. 대행계약의 이행실적 보고: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참여기
술자 명단이 포함된 것을 말
한다) 또는 교통영향평가 심
의완료 통보서

제13조의3(교통영향평가 대행실
적 등의 공고) ①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
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1.교통영향평가대행자별 대행업
무 건수, 평가대행 비용 등을
포함한 대행실적

2. 교통영향평가대행자별 처분
내용 및 처분 사유를 포함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② 수탁기관의 장은 교통영향평
가대행자의 대행실적, 교통영향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 등록현
황 및 기술인력의 교통영향평가

<신 설>

관련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1.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2.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해당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의4(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활용) 법 제52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28조에 따른 업무의 폐업

3. 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영향

	<u>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u> 4. <u>법 제32조의2에 따른 교통영</u> <u>향평가기술자의 관리 및 교통</u> <u>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u> 5. <u>법 제51조2에 따른 대행실적</u> <u>의 관리</u> 6. <u>그 밖에 기초자료 연구·조</u> <u>사의 수집과 보급 등 국토교</u> <u>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u> <u>하는 사항</u>
--	---